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면)

신 청 인	경 유 기 관	처 리 기 관
신청서 작성 (승인·발송) (송부 : 신청) 접 수 재판정·재심사 (자문단 또는 심의위원회) 기안 결재		
		○ 산업통상자원부 - 별표 2(이중용도품목)의 제1부부터 제9부의 전략물자 - 제6장 자율준수체제 및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관련 ○ 원자력안전위원회 - 별표 2의 제10부(원자력 전용품목)의 전략물자 ○ 방위사업청 - 별표 3(군용물자품목)의 전략물자 - 수입국이 별표 2에 열거한 전략물자를 군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